

의안번호	2208641
의 퇴 인	오세희 의원
회 답 일	2025. 4. 22.
추계번호	25A1231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등이 폐업 주유소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79억 6,700만원원, 2030년에 81억 8,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403억 7,000만원(연평균 80억 7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(안 제12조의2)	7,967	8,020	8,074	8,128	8,182	40,370	8,07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의2(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)	-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(제1항) -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 및 사업전환 지원의 기준, 방법·절차 등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조의2(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 본 추계에서는 폐업에 따른 토양정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본 추계는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한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118994)에 대한 비용추계를 준용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의 지원 대상인 폐업 주유소 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「전국 주유소 등록 현황」(2024.12.31. 기준)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하며, 연도별 주유소의 신규 등록 및 폐업 비율 등은 최근 5년(2020~2024년) 평균 수준으로 가정함
 - 추계 기간 동안 전국 주유소 수는 2026년 1.1만개, 2030년 1.0만개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
 -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, 2022년 기준 전국 주유소 수는 11,155개로 추정되며,¹⁾ 2023년 이후 주유소 수는 「전국 주유소 등록 현황」(2024.12.31. 기준)에

1) 동 자료는 2022년 12월 4일 기준임.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」(의안번호 2118994) 참고

- 근거한 연도별 주유소의 신규 등록(0.6%) 및 폐업(1.9%) 비율을 적용함
- 최근 5년 동안 주유소의 평균 폐업 비율(1.9%)을 고려할 때 추계기간 동안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 주유소 수는 2026년 207개, 2030년 196개 등으로 추정됨

□ 개정안의 폐업지원금은 폐업에 따른 토양정화비용(2022년 기준 주유소 1개당 최소 7,000만원)으로 가정하며, 추계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함

- (사)한국주유소협회 제출자료에 따르면, 1개 주유소를 철거하는 경우 발생하는 토양정화비용은 주유소의 규모, 토양정화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7,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(2022년 기준)
- 본 추계에서는 최소 비용(7,000만원)으로 추계하며, 2023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다음과 같음
 - 2023년 3.6%, 2024년 2.3%, 2025년 1.9%, 2026년 이후 2.0%²⁾

□ 개정안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폐업에 따른 비용(토양정화비용)에 대해 국가 등이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, 2026년에 79억 6,700만원 등 5년 동안 총 403억 7,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주유소 수 (A, 만개)	1.1	1.0	1.0	1.0	1.0	—
지원대상 폐업 주유소 수 (B=A×1.9%, 개)	207	204	201	199	196	—
토양정화비용 (C, 백만원/개)	77	79	80	82	83	—
추가재정소요 (B×C×50%, 백만원)	7,967	8,020	8,074	8,128	8,182	40,37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2025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 기준임.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